안성원곡물류단지 처분신청 대상 필지 양수인 선정 공고

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,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하여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 용지 양수인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대상토지

사업지구	용도	가지번	지번	면적(㎡)	양도금액	공급방법	토지사용시기
안성원곡 물류단지	지원시설용지 (근린생활시설)	SR1-4	칠곡리 928-5	570.0	372,000,000	추첨	잔금납부 후

① 금 번 양수자 선정 공고는 신규 공급계약 공고가 아닌 「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1조에 의거하여 기존에 분양계약을 체결 후 대금 납부 중에 있는 분양계약자가 우리 공사에 처분신청을 함에 따라 양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입니다.

② 대상 토지는 **「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**의 적용을 받는 토지입니다. 양수 신청 전 [9.물류단지 내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] 및 관련 법률을 **반드시 열람 · 확인해야하고,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**

③ 양도가격은 양도자(현재 분양계약자)와 GH간에 체결된 토지대금 원금입니다.

④ 토지사용은 **잔금납부 후 소유권이전 완료 시** 즉시 가능합니다.

2. 양도가격 내역 및 대금납부 방법

약정차수	약정일자	금액	납부방법
계약금	2022-01-04	37,200,000	양도자에게 납부
중도금1차	2022-04-04	85,800,000	**권리의무 승계 전** GH 납부
중도금2차	2022-07-04	83,000,000	권리의무 승계 후 약정 일자에 따라 GH 납부
중도금3차	2022-10-04	83,000,000	
잔금	2022-12-04	83,000,000	

① 계약금은 공고일 현재 양도자(현 계약자)가 GH에 기납부한 금액입니다. 양수자 선정 후 양수자는 양도자·양수자·GH간 **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 전까지 양도자에게 계약금 변제를 완료**하여야합니다.

② **중도금1차는 현재 연체 중으로 권리의무 승계 전 GH에 납부 하셔야하는 금액입니다.** 중도금1차에 대한 **지연손해금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하에 납부 가능**하며 중도금 1차 및 지연손해금 전액이 납부된 이후 권리의무 승계가 가능합니다.

③ 중도금2차·중도금3차 및 잔금은 권리의무승계 후 양수자가 약정일자에 따라 GH에 납부하셔야합니다.

④ 대상 토지의 대금납부 조건은 1년 분할납으로 선납할인 및 할부이자가 적용되지 않은 계약 건입니다.

3.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

① 신청방법 : **방문 접수 · 등기 우편 접수**

※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**2022. 5.11.(수)까지의** 소인분만 인정되며, 양수자 선정 추첨일자 이전(2022. 5.13(금)까지)에 도착하여야합니다.

※ 등기우편 접수 주소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(권선동) 판매총괄처 산단판매부

② 신청자격: **일반 실수요자(신청자격 제한 없음)**

4. 신청일정 및 장소안내

구 분	일 정	장 소
처분공고	2022. 4. 29.(금)	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(http://buy.gh.or.kr)
양수 신청서 제출기간	2022. 5.2.(월) ~ 2022. 5.11.(수) (10:00~17:00)	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(권선동) 경기주택도시공사 판매총괄처 산단판매부
양수자 선정	2022. 5.16.(월) (14:00)	경기주택도시공사 판매총괄처 산단판매부
양수자 발표	2022. 5.16.(월) (17:00)	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(http://buy.gh.or.kr)
권리의무승계	2022. 5.18.(수) ~ 2022. 5.20.(금)	경기주택도시공사 판매총괄처 산단판매부

※ 계약체결 및 접수장소 :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(권선동) (담당자 ☎ : 031-220-3534)

※ 권리의무승계 계약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[8.권리의무승계 계약절차]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① 양수 신청서 접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.

② 양도자와 양수자는 2022. 5.19.(목)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권리의무승계 계약 전 계약금과 중도금 1차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변제 완료하여야 합니다.

③ 양도자와 양수자는 2022. 5.20(금)까지 GH와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내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양수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④ 양수 신청인 명의와 권리의무승계 계약체결인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.

⑤ 금회 공고에서 양수신청자가 없을 경우 2022. 5.17.(화) 10:00부터 선착순으로 양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. 선착순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공급신청 접수 장소에 먼저 도착한자를 우선으로 합니다. 단 동시에 도착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현장 수기 추첨의 방법으로 양수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
5. 양수자 결정방법 : 추첨에 의함

① 신청 기간 내 2건 이상의 양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유효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양수자를 결정합니다.

② 단독으로 신청 접수된 경우에는 추첨 없이 신청자를 분양대상자로 선정합니다.

③ 추첨 시 양수자 외 예비양수자도 동시에 선정하며, 예비 양수자는 2인까지 선정합니다. 양수자가 해당기간 내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 순서에 따라 양수자를 결정합니다.

④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하여 추첨관에 갈음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렴감사실 입회하에 추첨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며, 추후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추첨과정 녹화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양수 신청 시 구비서류

[구비서류]

구 분	구 비 서 류
공 통	○ 양수신청서
개 인	○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1부 ○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(계약자 본인발급), 주민등록등본 각1부
법 인	○ 법인등기부등본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, 대표자 신분증 ○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(사용인감계 제출), 법인인감증명서 1부
기 타	**[대리인 방문 시]** ○ 위임장(신청인 본인 인감날인) ○ 신청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

① 2인 이상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
②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③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.

④ 양수 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, 추첨 시 유효 접수 건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.

7. 대금납부조건 및 각종 이자율

할부이자율, 선납할인율,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향후 금리변동, 우리공사 방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.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

① 금회 공급 토지의 대금납부조건은 1년 무이자 균등분할납부로 선납할인 및 할부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② 금번 양수자 선정 공고는 신규 계약 건이 아닌 기 체결된 계약의 양수자(권리의무승계자)를 선정하는 공고로서 기존 계약 조건 및 대금납부조건의 변경은 불가합니다.

③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(할부이자 포함)에 대하여 **연6.5%의 지연손해금이 부과**됩니다.

8. 권리의무승계 계약 절차

구 분	일 정	계약 대상자
양수자 선정 및 발표	2022. 5.16.(월) 17:00	양수자 · GH
매매계약 체결	2022. 5.17.(화) ~ 2022. 5.19.(목)	양도자 · 양수자
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	2022. 5.20.(금) 까지	양도자 · 양수자 · GH

① 양수자 선정 발표 이후 권리의무승계 계약 전 양도자와 양수자는 대상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셔야합니다.

② 권리의무승계 계약체결 전 변제되어야 할 사항은 **계약금, 중도금1차 및 지연손해금**입니다.

③ 양도자·양수자 간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은 양도금액(372백만원)이며 공고일 현재 중도금 1차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대금 지급사항은 양도자와 양수자간 합의 후 납부 가능하십니다.

9. 물류단지 내 처분제한 및 준수사항

① 안성원곡물류단지 공급 토지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, 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” 제51조(개발한 토지·시설 등의 처분제한) 및 동법시행령 제42조(처분제한 대상 토지·시설 등의 양도 등)가 적용되어 처분이 제한(분양권 양도 불가)됩니다.

② 지원시설 및 단독주택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·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. 단, 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” 제51조 제1항과 관련하여 **우리공사는 관리기관으로서 해당 토지·시설을 직접 양수하지 않고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 선정절차를 진행합**니다.

※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**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,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**

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, 분양받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

③ 처분관련 사항은 **관련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 조례, 법률 등의 제·개정시 변경된 규제에 따르며, 계약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.**

[공통사항]

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('17.1.20.시행)』에 따라, 동 법률 시행 이후 토지에 대한 최초 공급계약 및 **명의변경(전매계약)시**에도 실거래신고대상이며,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.

② 금번 공급용지에 대한 거래는 양도자·양수자 간 거래로 부동산거래신고는 양도자·양수자가 직접 완료하신 뒤 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(사본)을 제출하셔야합니다.

③ 2022. 2.28. 이후 1억원 이상 토지계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 시 토지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셔야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양도인과 양수인 본인이 관할 지자체에 등에 확인하셔야합니다.

④ 향후 정부의 정책 또는 관련조례, 법령 등의 제·개정 시 변경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10.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

①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,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.

②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건축을 위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
11.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

① 취득세는 토지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신고·납부하여야 하며,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② 잔금납부약정일(최종할부금)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
③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(매년 6월 1일) 현재 사실상 소유자이며, 사용승낙일, 대금완납일 또는 잔금약정일 중 빠른날 이후부터는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이므로 매수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.

④ 주요 세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, 세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관할 지자체 등에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.

12. 유의사항

[공통사항]

① 본 공고문 및 게시자료, 매입신청 유의사항, 토지의 현황(형상, 문화재, 연약지반, 암반, 법면, 고저, 외부유입수 배수처리 등)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/확인하시기 바라며,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.

② 양수 신청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 “물류법”)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및 본 물류단지 개발계획, 실시계획, 환경·재해·교통등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, 에너지사용계획,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 법률과 건축법규(건축법령, 주차장법, 지자체 조례등 포함), 지구단위계획, 물류단지 관리기본계획, 공급공고문 등을 분양 신청전 반드시 열람 · 확인해야하고,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 있으며,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법규에 따라야 하고, 건축제한사항은 공급공고일 이후 법령 · 지자체 조례 등 제·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령·조례에 따라야 합니다.

※ 향후 관계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의 개정,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축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③ 개발계획, 실시계획, 지구단위계획, 에너지사용계획, 각종 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이 추가·변경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(형상, 세대수, 용적률, 면적 등) 및 공급필지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④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(건폐율, 용적률, 층수, 세대수 등)은 최고한도이므로 실제 건축 가능한 층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, 토지사용 장애사항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⑤ 개발계획승인도서, 실시계획승인도서, 공사계획평면도, 지구단위계획, 각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안성시청에서 매입신청 및 계약 전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⑥ 분양공고문 내 과련 내용은 발췌된 내용으로, 공급신청전 상기 “①”항 및 “②”항의 관련자료 전문을 열람·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(신청인)에게 있습니다.

⑦ 진입로설계시 가로수 저촉여부는 관할 지자체 협의 또는 허가를 거쳐 이설하여야 하며, 가로등·공원·가로수·조경시설물·CCTV·보도육교·전기공급시설·변압기·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고 추후에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진출입로 개설시에는 가로등 등의 지하매설관로가 손상되지 않도록 공사해야 하고 관할 지자체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, 진출입 차량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,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시설을 설치하기 바랍니다.

⑧ 관공서와 공공시설 등의 입주시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,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.

⑨ 인접도로에 전력구 구조물이 매설되어 있는 경우, 흙막이 가시설 및 지하굴착 공사시 확인 후 시공하고, 공사 시행전 한전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.

⑩ 매수인은 매입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,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⑪ 매수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 · 준수하여야 합니다.

⑫ 관공서 및 공공시설 등 지구 내 공급 대상 토지는 향후 시장여건 및 수요를 감안하여 공급될 예정이며 향후 부지공급시기, 매수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이 진행되므로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.

[부지사용 관련]

① 매수인은 목적용지에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(포장·세륜시설 등) 및 임시가시설(휀스, 우오수 배제시설 등) 등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성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반드시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매수인은 건축 등 토지사용시 도로, 상하수도, 경계석,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·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하며,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안성시 관련부서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.

③ 개별부지의 사업시행에 따른 완화차로 및 출입로, 신호등, 변경된 보도, 경계석 등에 관련된 사항은 토지사용자가 책임 시공하여야 합니다.

④ 오수, 우수, 상수도 관로, 법면처리 등 설계시 우리공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,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(우·오수, 상수관로 등) 연결공사 시행전 안성시 관련부서의 인·허가 및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, 연결한 후 안성시 관련부서에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(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)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.

⑤ 토지 매수자는 건축터파기 등 공사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관련기관이 시행한 기반시설(도로, 상하수도, 가스, 난방 등)에 지장이 없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, 기 설치된 기반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우리공사 시방서 등의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,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관련기관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.

⑥ 매수인은 건축공사 진행 중 오수 및 상수연결과 접합 등 지하매설물 굴착시 안성시 관련부서와 협의 및 인허가 등을 이행해야 하며, 인입관로 연결 시공사진(원근경)을 촬영하여 건축물 준공 또는 사용전 안성시 관련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
⑦ 전력, 통신, 가스 등 간선시설의 연결설치는 매수인이 각 시설설치기관에 인입방법 등을 별도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, 굴착공사시 안성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인입공사시 파손, 훼손된 공공시설물은 매수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
⑧ 도로, 공원, 상하수도, 전기, 통신, 가스의 공사완료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, 특히 전기·통신·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에서 공급하므로 설치완료시기는 공급주체의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.

⑨ 매수인은 대금완납 후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를 하여야 하며, 전력·통신·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기관과 인입방법,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.

⑩ 건축터파기 등 토공사 시 암·연약지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암·연약지반 처리 비용 및 절토·외부사토 비용 등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, 이때 발생하는 토사는 해당 산업(물류)단지 내 적치 또는 사토가 불가합니다.

⑪ 가로등, 공원등, 가로수, 보도육교, 전기공급시설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,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⑫ 매수자는 토지주변 가로수, 가로등, 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 및 토지 조성고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(진출입로, 출입문 등)에 반영하여야 합니다.

[건축관련]

① 건축인허가 등 관련사항은 안성시청 건축과·도시계획과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의 사전확인을 요하며, 개별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건축계획 착수 시 해당시의 건축인허가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② 본 산업(물류)단지에 건축물 시공 시 토질조사 등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설계·시공합니다.

③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자 비용부담의 경계복원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, **우리공사에서 제공한 시공측량에 따른 부지경계는 참고용 자료로만 활용될 수 있습니다.** 설계 및 시공 오류로 인한 인접부지 침범 시 매수인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토록 합니다.

[연약지반 관련]

① 건축주는 건축 설계 시 분양받은 토지의 연약지반 분포범위, 심도, 지반처리내용, 잔류침하량 등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기초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합니다.
- 건축 시에는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토지 사용 시 유의사항을 열람한 후 필요 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·시공하여야 합니다.
- 건축주는 연약지반처리 완료 전에 토지사용을 원할 경우 건축주의 책임 하에 지반 처리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② 본 부지의 연약지반 처리는 현재의 성토하중으로 침하시킨 것으로 건축시 부지의 지반고를 변동시키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지반고를 변동시킬 경우는 건축주가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.
※ 연약지반처리 공법(pre-loading 및 P.B.D공법) 사용에 따라 굴착 터파기시 해당 공법에 사용된 자재(P.P MAT, Plastic board drain, 수평배수재 등)는 건축주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.

③ 건축부지와 도로 경계부위의 지하매설물은 상대적인 부등침하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연성이음 등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.

④ 건축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.

⑤ 말뚝기초로 지지되는 건축물과 이에 연결되는 가스, 상·하수도관의 경계 연결부는 부등침하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여 연성이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▣ 본공고 및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.

▣ 경기도고시 제2014-5072(2014.9.30.)호「안성 원곡물류단지 지정(7차) 및 실시계획(6차)」등 해당 물류단지 관리기본계획,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▣ 문의처

구 분		문의 전화
용지 공급 및 분양계약 관련	산업단지처 산단판매부	031-220-3534
토지분양시스템 이용문의	홈페이지 ARS	1588-0466

2022. 4.29.

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